

2022년도 본청4차[환경과]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2022년도 본청 제4차[환경과] -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 기간 및 범위

- 2022. 10. 11. ~ 10. 17.(5일간) / 2021. 7월부터

###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 감사결과 》

### ■ 총 지적건수 : 10건

###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9건 (주의 7건, 시정 2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 1,731,000원
- 신분상 조치 : 1건(훈계 2)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0부. 끝.

## 주요 지적사항

### 본청4차[환경과]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0건	주의 7 시정 2	훈계 2	회수 1,731천원
1	◦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997천원
2	◦ 퇴직공제부금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734천원
3	◦ 공사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제비율 적용 미흡	주의		
4	◦ 소규모사업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주의		
5	◦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주의		
6	◦ 유류포인트 세입처리 미이행 및 보험료 등 환급 소홀	주의		
7	◦ 체납 세외수입 징수 소홀	주의		
8	◦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2	
9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주의		
10	◦ 회계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997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천원)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 ○○○ 하수관로 정비사업	21.12.21.	21.12.22. ~ 22.06.14.	(주)○○ □□□	95,000	94,002	997

###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 ○○○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은 안전관리시설 사용 내역 증빙자료가 없는 등 정산내역과 시공사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997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과오지급 된 공사대금 997천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734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퇴직공제부금 정산 부적정

【현 황】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천원)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 ○○○ 하수관로 정비사업	21.12.21.	21.12.22. ~ 22.06.14.	(주)○○ □□□	95,000	94,266	734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를 산정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 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 및 실제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함.
- 그런데 「○○ ○○○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은 퇴직공제부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734천원(제경비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과오지급 된 공사대금734천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제비율 적용 미흡

【현 황】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천원)			비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계(5건)			400,196	361,386	38,810	
○○○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장물(하수관로) 이설공사	(주)○○ □□□	21.08.19. (21.08.24. ~ 21.10.07.)	40,350	34,320	6,030	
○○ ○○○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 □□□	21.12.21. (21.12.22. ~ 22.06.14.)	111,270	95,000	16,270	
○○ ○○○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 □□□	21.11.30. (21.12.02. ~ 22.06.08.)	154,426	137,916	16,510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	○○○○(주) □□□	21.11.26. (21.11.30. ~ 22.12.23.)	46,930	46,930	-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	○○○○(주) □□□	21.11.26. (21.11.30. ~ 22.12.23.)	47,220	47,220	-	

### 【위법부당사항】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지(제비율) 적용기준」을 건축·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이를 참고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런데 「○○○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장물(하수관로) 이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발주 당시의 가격이나 품셈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 당시 기준(2021. 7월 고시)이 아닌 이전 기준(2021. 1월 고시)으로 적용하여 원가설계를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현 황-1】

공 사 명	계약금액 (천원)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상호	성명	
계(2건)						
○○ ○○○ 하수관로 정비사업	137,916	21.12.02	22.06.08	(주)○○○○	□□□	
○○ ○○○ 하수관로 정비사업	94,620	21.12.15	22.05.24	○○○○(주)	□□□	

【현 황-2】

공 사 명	계약금액 (천원)	착공일 준공일	도 급 자	폐기물처리 계약물량	비고
계(2건)	94,150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	46,930	21.11.30. ~ 21.12.23.	○○○○(주) □□□	0.22톤	건설 폐기물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	47,220	21.11.30. ~ 21.12.23.	○○○○(주) □□□	0.44톤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



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수 상 검수자 및 서명란에 공사 감독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을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 외 1건(현황-2참조)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 증빙서류(간이 인수인계서, 계량증명서 등)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현 황】

○ 사후품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연번	품의일자	카드승인일자	금액(원)	사용내역	비고
			<b>4,773,800</b>		
1	2019.11.15.	2019.11.14.	1,600,000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환경감시원 피복비 구입	
2	2019.12.09.	2019.11.19.	132,000	수렵장 운영에 따른 협업기관 격려품 지원	
3	2019.12.11.	2019.12.09.	93,000	수렵장 운영에 따른 협업기관 격려품 지원	
4	2020.01.15.	2020.01.13.	96,700	행정사무용품 구입	
5	2020.01.20.	2020.01.13. 2020.01.16.	90,000 300,000	환경업무관련 협업기관 격려품 지원	
6	2020.01.20.	2020.01.16.	258,600	수렵장 운영에 따른 협업기관 격려품 지원	
7	2020.05.20.	2020.05.19.	52,000	사무실 방석 세탁	
8	2021.02.23.	2021.02.22.	71,800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및 경비동 화장실 용품 구입	
9	2021.04.29.	2021.04.27.	33,000	2021 자원순환센터 집게차 정기검사	
10	2021.06.18.	2021.06.15.	200,000	자원순환센터 운영장비 유류(요소수) 구입	
11	2021.06.22.	2022.06.16.	1,250,000	하수도 업무종사자 피복 구입비 지급	
12	2022.05.19.	2022.05.17.	496,700	자원순환센터 환경정비용 청소용품 구입	
13	-	2022.05.17.	100,000	-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목별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① (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② (원인행위)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 결정→ ③ (지출)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 입금)하는 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환경과에서는 2019. 11. 14.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환경감시원 피복비 구입 등 총13건 4,773,800원을 집행하면서 【현황】 “사후품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과 같이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먼저 지출을 결정하고 사후에 품의하여 결재를 받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유류포인트 세입처리 미이행 및 보험료 등 환급 소홀

【현 황】

○ 유류포인트 적립현황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사항	세입처리여부	비고
	합 계	689,370			
1	2019.11.20.	255,150	유류포인트	부	
2	2019.11.20.	113,150	유류포인트	부	
3	2020.11.20.	134,250	유류포인트	부	
4	2021.11.25.	95,290	유류포인트	부	
5	2022.05.25.	91,530	유류포인트	부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현황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사항	환급 및 세입처리여부	비고
	합 계	164,070			
1	2019.09.27.	280	장기요양환급	부	
2	2019.09.27.	3,780	건강보험환급	부	
3	2020.02.13.	5,360	장기요양환급	부	
4	2020.02.13.	61,100	건강보험환급	부	
5	2020.06.08.	8,400	장기요양환급	부	
6	2020.06.08.	85,150	건강보험환급	부	

【위법부당내용】

○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장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유류포인트 689,37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았으며, 2021. 3.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164,070원을 세입 세출외현금 통장이 아닌 카드결제통장으로 환급받았으나 이후 세입 및 환급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체납 세외수입 징수 소홀

【현 황】

○ 세외수입 체납현황

납부자명	부과금액 (원)	최초 부과일자	최초 납기일자	독촉일자	최종 납기일자	비고
A	206,000	2019.11.01.	2019.11.18.	2022.07.05.	2022.08.0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9.10. 8,050원 일부수납
B	206,000	2019.11.01.	2019.11.18.	2022.07.05.	2022.08.0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C	365,500	2019.08.30.	2019.09.30.	2022.07.05.	2022.08.01.	폐기물관리법 위반
D	469,580	2019.11.07.	2019.12.07.	2020.12.29.	2021.01.13.	소송비용
E	60,500	2021.06.02.	2021.06.30.	2022.07.05.	2022.08.01.	폐기물관리법 위반
F	80,000	2022.06.20.	2022.07.04.	부	2022.10.3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위법부당사항】

1. 미수납 과태료 독촉 및 압류조치 소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당사자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의 조문별 해설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독촉 및 제33조 이하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며 그 징수절차를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이에,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독촉절차는 압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환경과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최초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납부기한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그 납부기한도 20일 이상을 두었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압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2. 소송비용액 회수업무 추진 소홀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2조(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에서는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소송비용액 회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소송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7조(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 제2장(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재산명시절차 등)과 제2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건주관부서에서는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한 후 납부되지 않은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재고지, 독촉 및 강제집행절차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송비용액을 회수하여야 함.
- 그런데도 환경과에서는 2019.11.3. 소송비용 확정통보 이후 2019. 11. 7. 소송비용액 최초 부과 및 2020.12.29. 재고지 하였으나, 재고지 이후에 독촉 및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미회수 상태로 있어 소송비용 회수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없음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수탁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

사업명	위원수	심사방법	수당지급액	수당지급업체	비고
<2022> ○○○○ 철거 및 ○○○○ 사업	5명 (공무원 1명/ 민간인 4명)	서면심사	280천원 (70천원*4명)	사)○○○○ ○○○○ (수탁자)	협약체결 : 04.15. 지급요청 : 05.02.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5호에 직무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4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항제1호에서도 법령이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동군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일반위원회 참석수당은 1시간 기준으로 7만원,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의 경우 안전 심사수당으로써 건당 3만원(100쪽 이내)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환경과에서는 ○○○○ 철거 및 ○○○○사업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을 위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11.~4.12.에 걸쳐 추진한 비대면 평가(서면심사)결과에 따라 사)한국석면안전협회를 선정하고 4. 15일에 협약을 체결함.
- 이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에 따른 민간위원의 심사수당을 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지출했어야 하나 해당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수탁업체에게 서면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7만원씩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요청을 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써 수탁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신분상 조치 : \*\*6급 G - 훈계

\*\*8급 H - 훈계

【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현 황】

○ 집행내역

연번	제목	내부결재	품목	수량	지출과목	비고
1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19.09.09.	와인	3set	업무추진비	
2	하수도설치사업 예산 업무협의를 위한 특산품 구입	2019.09.20.	포도	2상자	업무추진비	
중 략						
35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22.06.22.	양갱	6상자	업무추진비	
36	지하수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22.07.26.	와인	2set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환경과에서는 2019.09.01. ~ 현재까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 등 총 36회에 걸쳐 특산품 또는 홍보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련 규정 미준수

【현 황】

○ 물품구입 현황

건 명	내부결재	업체명	금액(원)	비고
전입자 인증스티커 제작	2021.01.14.	○○○○○	4,500,000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구매	2021.01.14.	○○○○○	3,600,000	
쓰레기종량제 봉투(pp포대) 제작구입	2021.09.13.	○○○○	7,843,000	
쓰레기종량제 봉투(pp포대) 제작구입	2022.01.11.	○○○○	7,843,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무과에서는 매년 일상경비 교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지하고 있으며, 일상경비 교부·운영계획에는 사무관리비의 경우 소모품 구입, 소규모 용역 등은 건당 500만원 미만을 교부범위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 제2장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현 황】**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전입자 인증스티커 제작 외 1건은 통합발주가 아닌 분할발주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pp포대 제작·구입 2건은 1건당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에 따라 재무과에 의뢰하여 구입을 추진 하였어야 했음에도 자체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